Korea Trade Review (Korea Trade Rev. ; 무역학회지)
Vol. 44, No. 1, February 2019 (pp. 177-191)
https://data.doi.or.kr/10.22659/KTRA.2019.44.1.177

貿易學會誌
ISSN 1226-2765 (Print)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는 GATT/WTO 규정에 타당한가?

인즈후이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박사과정

최창환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Is the U.S. Trade Expansion Act Section 232 Consistent with GATT/WTO Rules?

Zi-Hui Yin[a], Chang-Hwan Choi[b]
[a]International Trade, Dankook University, South Korea
[b]International Trade, Dankook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20 January 2019, Revised 24 February 2019, Accepted 26 February 2019

Abstract

Global trade protectionism has increased further and U.S. priorities and protectionism have strengthened since Trump took office in 2017. Trump administration is actively implementing tariff measures based on U.S. domestic trade laws rather than the WTO rules and regulations. In particular, the American government has recently been imposing high tariffs due to national security and imposing economic sanctions on other countries' imports. According to the U.S. Trade Expansion Act Section 232, the American government imposed additional tariffs on steel and aluminum imports to WTO member countries such as China, India, and EU etc. on march 15, 2018. Thu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whether the U.S. Trade Expansion Act Section 232 is consistent with GATT/WTO rules by comparing the legal basis of US / China / WTO regulations related to Section 232 of the U.S. Trade Expansion Act, and gives some suggestions for responding to the Section 232 measure. As the Section 232 measure exceeded the scope of GATT' s Security Exceptions regulation and is very likely to be understood as a safeguard measure. If so, the American government is deemed to be in breach of WTO' s regulations, such as the most-favored-nation treatment obligations and the duty reduction obligations. In addition, American government is deemed to be failed to meet the conditions of initiation of safeguard measure and violated the procedural requirements such as notification and consultation. In order to respond to these U.S. protection trade measures, all affected countries should actively use the WTO multilateral system to prevent unfair measures. Also,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standard jurisdict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and to explore the balance of the WTO Exception clause so that it can be applied strictly. Finally, it would be necessary for Chinese exporters to take a counter-strategy under such trade pressure.

Keywords: US-China Trade War, Protectionism, Section 232 Measure, GATT/WTO Rules.
JEL Classifications: K19, K29, K33

[a] First Author, E-mail: yinzihui66@gmail.com
[b] Corresponding Author, E-mail: hub21@dankook.ac.kr
ⓒ 2019 The Korea Trad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Ⅰ. 서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한 이후 미국의 일방주의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2017년 3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2017 대통령 무역의제(The President’s 2017 Trade Policy Agenda)”에서 미국 주권을 촉진하여 미국의 무역법을 시행할 것이며, 미국의 경제력을 활용하여 중국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 수출 확대 그리고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미국통상정책의 4대 핵심방침(major pillars)을 발표했다. 또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항공기, 조선 및 반도체 산업을 6대 핵심 산업 육성 정책으로 발표했다(U.S. Tade Representative, 2017). 따라서 미국은 태평양 횡단 파트너십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TPP 협정)을 탈퇴했으며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 대신 새 무역협정(USMCA)을 출범했다. 그리고 한국에게도 한-미 FTA의 재협상을 요구하였다(Song Back-Hoon and Lee Chang-Soo, 2018).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내 통상법을 근거한 일련의 무역제재조치를 적극적으로 발동시키고 있으며 대대적인 관세 부과 조치를 취했다. 특히, 최근 미국은 오랜 시간동안 사문화 상태인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개시하며 “국가안보”를 이유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다른 국가의 수입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다. 2018년 3월 15일 미국은 제232조를 법적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추가 관세를 중국 등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회원국들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 EU 등을 포함한 9개국은 WTO 제소 및 보복관세로 대응하여 대대적인 무역 전쟁이 일어난 상태이다. 이러한 미국의 대대적인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232조 조치의 내용 및 특징을 파악하고, GATT/WTO 규정에 타당 여부를 분석함으로서 그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한 제232조 조치는 GATT “예외 조항”에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GATT/WTO 규정상의 최혜국대우 의무나 양허의무의 위반은 GATT 제XXI조로 인한 정당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중국을 포함한 기타 제소국의 의견은 제232조 조치는 GATT에서 예외로 인정한 안보조항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WTO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며, 사실상 세이프가드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국의 제232조 조치가 GATT/WTO 규정의 합치 여부 분석 검토 및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이하와 같이 본문을 구성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제232조 조치의 법적 요건 및 실제 조사되었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제232조 조치의 성격 및 특징을 파악한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2018년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해 발표된 미국 상무부의 조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탐구하면서 이번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한 제 232조 관세조치의 내용, 미국의 주장 및 근거를 분석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제4장에서는 미국/중국/WTO 각각의 법적 근거를 비교하여 GATT/WTO 규정상의 합치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종합적으로 제232조 조치가 GATT/WTO 규정에의 타당성을 도출하여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제232조 조치의 법적요건 및 조사 분석

1. 법적 요건 및 특징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은 특정제품이 국가안보를 해치거나 위협을 가할 정도의 수입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것이며, 해당제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시 대통령 직권으로 고율관세를 부과하거나 쿼터 등 수입 물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본 규정이 GATT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1955년 무역협정연장법(Trade Agree-ments Extension Act of 1955)에서 처음 “국가 방위 요건(national defense requirement)”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국가 방위 요건은 비상시에만 개시 가능하며 국내 생산 위축 시 관세 협상권만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58년 무역협정연장법

(Trade Agreement Extension Act of 1958)에서 "국가 방위 요건"을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 요건"으로 확대하였다. 즉, 국내 안보에 중요시여기는 해당 물품의 국내 산업에 대한 수입품의 영향 및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안보 위협까지도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적용 범위를 확장하였다(Yoo, Ji-Yeong, 2017). 이후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로 개정하여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만 개시 가능한 것과 달리 민간단체들도 신청 관한을 부여하였다.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으며, 현재 2012년의 개정 조항이 적용된다. 이는 "수입품의 영향(the effects on national security of imports)"으로 "국가 안보의 위협이 존재할 경우(as to threaten to impair the national security)"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허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국가 안보를 위협 할 경우 관세 또는 기타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한다. 둘째, 상무부 장관(secretary of commerce)은 수사를 개시하여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결정하고 국방장관(secretary of defence) 및 기타 공무원과 협의한 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셋째, 대통령이 결정한 후에 의회에 보고한다. 넷째, 국산 제품의 방위와 국내 산업 복지에 대한 외국 경쟁의 영향 등의 조항들이 있다(19 U.S. Code § 1862). 위에 조항들을 살펴보면 주로 "수입품의 영향(the effects on national security of imports)"으로 미국 "국가안보의 위협(as to threaten to impair the national security)"이 존재여부에 대해 조사한 것이며, 만약 "국가 안보의 위협"이 존재할 경우 대통령은 상무부의 조사보고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 결과의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15일 이내 해당 수입을 조정(adjust imports), 고관세 부과, 쿼터 실행 또는 기타 비무역 관련 조치가 채택 가능하다.

또한 미국의 연방법원규정집(code: 15CFR 705.4)에 규정되어 있는 수입품의 국가 안보 조사 요건(criteria for determining effect of imports on the national security)을 살펴보면, "국가 안보"에 대한 정의는 명확히 나타나있지 않으나, "기타 관련 요인(any other relevant factors)" 및 미국 "경제의 약화(cause a weakening of our national economy)"를 초래할 "기타 관련 요인(any other relevant factors)"이라는 요건에 따라 포괄적인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232조 규정이 명시하고 있다. 즉, "국가 안보"를 위해 좁은 정의인 필요 국내 생산량, 국내 생산 가능량, 원재료 등을 고려하게 될 뿐더러 해당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국내 산업의 경제적 후생 효과까지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수입품의 국내산업은 대체로 인해 국내 산업의 실업문제, 생산력의 감소, 정부 세입의 감소, 국내 경제의 약화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다른 여러 요소 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미국이 "국가 안보"의 피해 요인을 조사하는 데에 있어 큰 유연성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제232조 조치의 조사 분석

〈Table 1〉과 같이 미국 산업안보실의 자료에 따르면 1962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제232조 하에 시행 된 사건은 총 28건이다. 그 중에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존재한다는 판정이 나온 사건은 총 10건이며, 실제 대통령의 명령으로 제한조치를 개시한 사건이 총 7개이다. 닉슨 대통령과 포드 대통령은 석유 위기로 국가 안보 문제가 야기 된 이유로 제232조를 근거로 제한조치를 채택했다. 1995년 WTO 설립 이래로 미국 정부는 2018년까지 총 4건의 "232 조사"를 시작했지만 1999년과 2001년에 시행한 조사에 대해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수입 조정을 위한 제재를 채택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2건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 조사한 사건이며, 이에 대한 조사는 모두 "국가 안보"에 위협이 존재한다는 결과로 고율관세조치를 부과하였다.

232조의 조사 품목을 살펴보면 주로 석유, 철강, 각종 금속, 우라늄 등이 있고 이중 현재까지 시행된 횟수 중 가장 많은 품목이 석유라는 점이 특징이다. 요청자의 경우에는 정부, 산업협회, 국회의원, 민간단체 그리고 대통령까지 광범위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요청자 중 민간단체와 국회의원이 조사를 요청한 것은 총 15건으로 54%에 해당되지만, 실제 "국가 안보" 관

Table 1. Case Analysis under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1962

Year	Industry	Claimant	Threat Judgement	Enforcement action
2017	Aluminum	President	O	10%
2017	Steel	President	O	25%
2001	Steel	Lawmaker	X	X
1999	Oil	The Minister of Trade	O	X
1994	Oil	Civilian Association	O	X
1992	Internal Circuit Ceramic	Private enterprise	X	X
1991	Gear	Civilian Association	X	X
1988	Plastic Roll Machine	Private enterprise	X	X
1988	Uranium	The Minister of Energy	X	X
1987	Oil	Government	O	Energy Industry Structure Improvement Plan
1987	Non-slip Bearing	Civilian Association	X	X
1987	Steel Cutting Machine	Civilian Association	Undecided	Voluntary export restrictions
1982	Libyan Oil	President	O	Libyan oil embargo
1982	Nut, Bolt, Steel Screw	The Secretary of Defense	X	X
1981	Chromium, Manganese	Civilian Association	X	X
1981	Glass Wire Chemical Manufacturing Machine	Private enterprise	X	X
1979	Oil	The Minister of Finance	O	Iranian oil embargo
1978	Oil	The Minister of Finance	O	Oil conservation charge department
1978	Nut, Bolt, Steel Screw	President	X	X
1975	Oil	The Minister of Finance	O	Additional charge
1973	Oil	Policy Committee	O	Imposition of import licensing fee
1972	Ultra-high Pressure Power Circuit	Private enterprise	X	X
1969	Miniature	Civilian Association	X	X
1968	Chromium, Manganese	Civil Committee	X	X
1965	Watch, Parts	President	X	X
1964	Non-slip Bearing	Civilian Association	X	X
1964	Tungsten	Private enterprise	X	X
1963	Manganese	Civilian Association	X	X

Source: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2018).

Fig. 1. U.S. Steel Imports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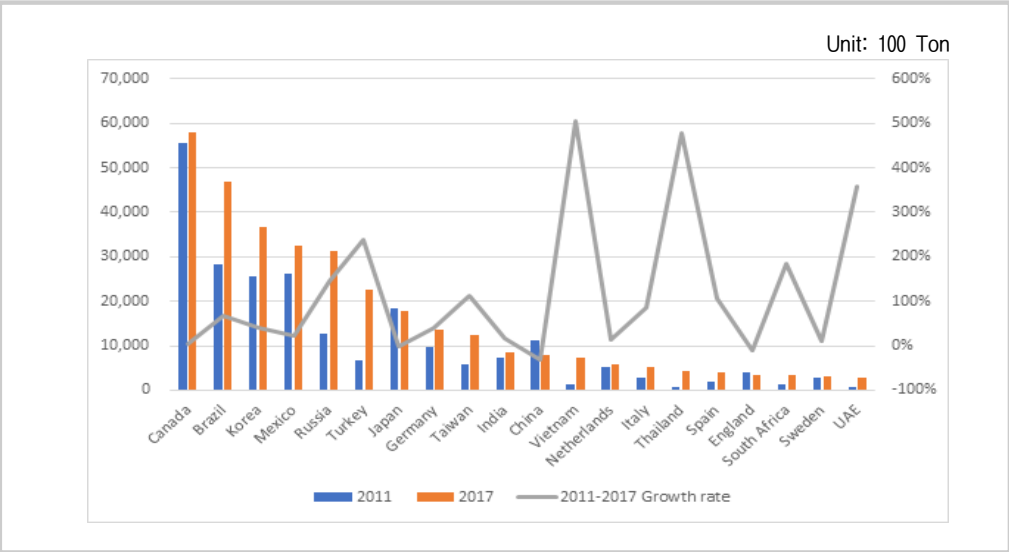

Source: U.S. Department of Commerce (2018).

런 위협으로 판정된 것은 단 1건 뿐이다. 반면 대통령, 각 부처 장관 또는 정부기관이 요청한 사건 13건 중 9건의 사건이 위협 판정으로 응답률이 약 69%로 요청자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보면 "232 조사"는 단순한 산업 조정 조치이기는 하나, 수입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와는 목적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민간단체의 요청이 국가 안보 위협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없기에, 실제 조치가 시행되는 사건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Ⅲ.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관한 제232조 관세조치

1. 제232조 관세조치의 내용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로, 미국은 최근 이삼 십년 동안 거의 사용되지 않은 다른 조사 조치를 적용해 왔다. 특히, 미국은 빈번히 "국가안보"를 이유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다른 국가의 수입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다. 2017년 4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에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232 조사" 개시 명령을 내렸으며, 2018년 3월 15일에 제232조 관세 조치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이번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관한 관세조치는 미국의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국가안보" 조항에 기초한 조치였다. "국가 안보"에 대해 미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이하: U.S.DC)는 보고서에 첫째, 국방요건 충족을 위한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생산 수급 및 인력, 제품, 원자재 등 비축 현황, 둘째, 해외 경쟁이 철강·알루미늄 산업과 연계된 산업의 경제 후생에 미치는 영향, 셋째, 수입 철강의 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대체에 따른 실업, 재정 손실, 기술 후퇴 등 부정적 영향, 넷째, 글로벌 철강 과잉 생산 관련 미국의 조치 등의 내용을 담게 되었다. 즉, 이번 "232 조사"는 전통적인 국제관계에서의 전시(戰時)를 대비한 국방 요건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 생태계의 상황에 따른 "경제안보"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조사기관의 재량을 인정했다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알 수 있다 (Yoo, Ji-Yeong, 2017).

Fig. 2. The Ranking of Aluminum Exports to the United States by Importing Country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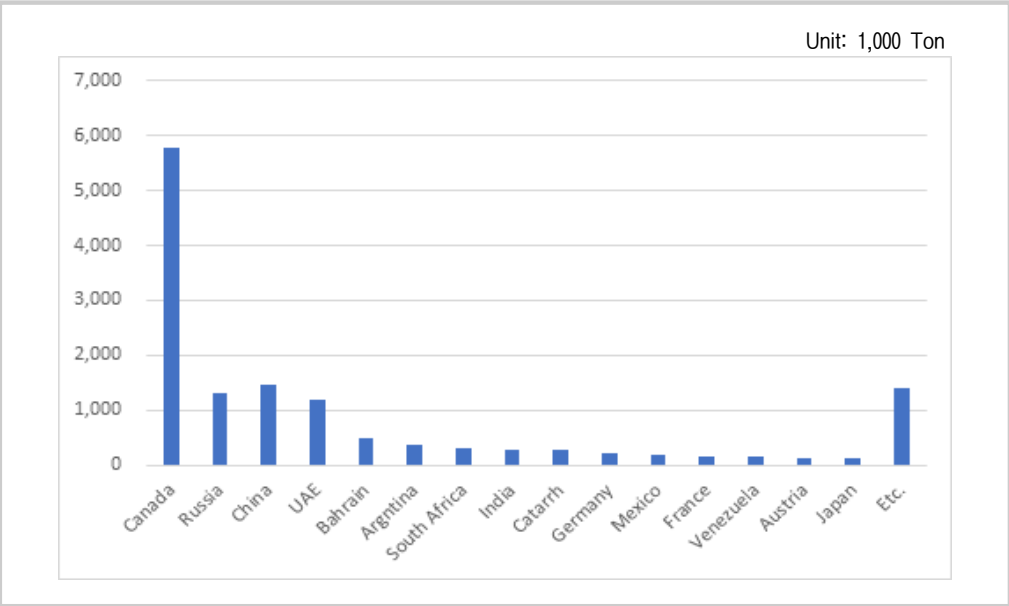

Source: U.S. Department of Commerce (2018).

이번 사건에서 U.S.DC는 철강·알루미늄을 수입하는 것이 미국 "국가 안보"에 주는 영향에 관하여 조사결과 보고서를 2018년 1월 11일, 17일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U.S.DC는 철강·알루미늄 수입이 미국 경제를 악화시키고 국가안보를 해할 우려가 있는 수량이며, 이런 상황 속에 수입되고 있으므로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장기적 안정성을 위해 설비가동률을 80%로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무역조치를 취해줄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하였다.

철강 수입 국가안보 영향보고서(the effect of imports of steel on the national security)에 의하면, 철강의 국내 생산 능력은 국방 수요 및 핵심 인프라 요구가 중요시되며, 특히 핵심 인프라(교통시스템, 발전소, 수도 시스템 등)의 국내수요가 증가되면서 매년 5,400만 톤이 소비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철강 수입이 국내 소비의 30%에 이르렀으며 과도한 철강 수입이 철강 산업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세계 최대의 철강 수입국인 미국은 2001년부터 철강 생산 능력을 유지해 왔으나 최대의 철강 수출국이자 철강 생산국인 중국의 철강 생산 과잉은 미국 국내 철강 산업의 쇠퇴, 공장 폐쇄 및 노동자 실업 증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Fig. 1〉과 같이 U.S.DC에서 발표한 모든 철강 수입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미국의 철강 수입은 2011년 대비 44% 증가했으며 2017년 모든 철강 수입은 3,274만 톤이었다. 동시에 미국 정부는 2017년 중국 철강 수입 비중이 2.4%에 불과하지만 중국의 철강 생산 능력은 세계의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3국으로부터 많은 철강 수입이 중국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U.S. Department of Commerce, 2018).

또한 U.S.DC의 알루미늄 수입 국가안보 영향보고서(the effect of imports of aluminum on the national security)에서 미국 국방부와 일부의 핵심 산업체가 많은 알루미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미국의 중요한 군사 및 상업 시스템에 필수적인 고순도 알루미늄 생

Table 2. Comparison of the U.S. Protectionist Measures

Measures	Legal Basis	Purpose	Contents	China's reaction
Section 232 Tariffs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Investigate whether relevant imports have harmed or threaten to harm "national security"	All steel imports: 25% duty imposed Aluminum imports: 10% tariff A temporary exemption has been announced to some countries such as the European Union, Australia and Korea, but the European Union, Canada and Mexico are not permanently exempted.	Filed in WTO on April 5, 2018 Up to 25% retaliatory tariff measures on items such as U.S. fruits and pork
Section 201 Trade Remedy	Section 201 of the Trade Act of 1974	Safeguard measures that can be initiated as a result of the surge in imports resulting in damage to the domestic industry	Up to 20% duty for large home washing machines Up to 30% tariff on photovoltaic cells / modules	Filed in WTO on August 14, 2018 Started anti-dumping and anti-subsidy investigation on U.S. sugarcane
Section 301 Tariffs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Investigate whether the Chinese government's laws, institutions and practice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unreasonable and discriminatory, and investigate whether it caused burdens or restrictions on the U.S. industry	July to August 2018: 25% tariff imposed on Chinese imports of about 50 billion dollars in aerospac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etc. September 2018: 10% tariff imposed on Chinese imports of about 200 billion dollars in electronic devices and furniture.	Filed in WTO on April 4, 2018 5% to 25% tariffs on U.S. imports worth 110 billion dollars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automobiles.

Source: Yin Zi-Hui and Choi Chang-Hwan (2018).

산은 외국 생산업체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알루미늄 산업은 "국가 안보"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국가 안보" 비상사태(예: 국내 알루미늄 생산량을 크게 늘릴 필요성)를 처리하지 못한다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U.S.DC는 국가 안보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 내 알루미늄 업체의 생산 능력을 보장하도록 알루미늄 수입량을 줄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U.S. Department of Commerce, 2018). 〈Fig. 2〉와 같이 U.S.DC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 러시아로부터 알루미늄 제품을 130만 톤, 중국에서 알루미늄 제품을 150만 톤, 아랍에미리트에서 알루미늄 제품을 18만 톤, 베네수엘라에서 알루미늄 제품을 16만 톤을 수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여 반덤핑 처분을 내렸으며, 모든 철강 수입품에 대해 25%의 일괄관세 부과와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10%의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한국, 유럽 연합 (EU),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및 다른 국가들에게 임시 면제를 발표했고, EU,

브라질, 캐나다의 면제 기간을 2018년 6월 1일까지 연장했다. 임시 면제 쿼터 조치를 수락 한 호주 및 한국과 같은 동맹국을 제외하고 EU,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는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영구 면제를 받지 못했다.

2. 미국 무역보호조치의 비교

이번 "미중 무역 분쟁"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통상법을 근거로 개시한 무역보호조치는 제232조 관세 조치 외에도, 제201조 관세 조치 및 제301조 관세 조치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Table 2〉와 같이 제232조 관세 조치, 제201조 관세 조치 및 제301조 관세 조치를 비교하였다.

2017년 5월 및 6월 미국은 국내법인 1974년 무역법 제201조(Section 201 of the Trade Act of 1974)에 의해 중국 수입품을 포함한 대형 세탁기 및 태양광 제품에 관해 제201조 관세 부과 조치, 즉 다자 세이프가드(global safeguard)를 개시하였다. 무역법 제201조에 따르면 다자 세이프가드는 상대국의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 산업의 피해 여부에 따라 모든 국가에 적용되었다. 단, 미국의 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각 국가에 대해 개별적으로 산업피해 조사를 실시 및 판정하며, WTO 개발도상국(GSP 수혜국)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번 제201조 관세 조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U.S.ITC(2017)의 보고를 근거로 하여 2018년 1월 22일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형 세탁기 및 태양광 수입품의 할당 내에서 최대 2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또한 미국 무역 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이하 'U.S.TR')는 미국의 기술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2017년 8월 8일에 1974 무역법 제301조(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라 "301 조사"를 발동하였다. 이 조사는 중국정부가 기술이전 및 지적재산권 관련 법, 제도, 관행은 불합리적이고 차별적인지에 대해 조사한 것이며 이는 미국 산업에 부담 또는 제한(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 and burden or restrict U.S. commerce)을 초래했는지에 조사한 것이었다. 2018년 3월 23일, U.S.TR (2018)에서 301조사 보고서를 내렸으며 이에 미국은 네 가지 점으로 지적하였다. 첫째, 중국은 중외 합작 투자 요건 및 외국인 지분 제한과 같은 외국 소유에 대한 제한 또는 다양한 행정 검토 및 라이센스 절차를 통해 미국 기업이 기술 이전을 하도록 강요한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의 기술관련 규정은 미국 기업이 비 시장 여건을 기반으로 중국 시민에 유리하도록 기술허가를 시행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셋째, 중국은 최첨단 기술 및 지적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해 중국 기업의 체계적인 투자 및 미국 기업 인수를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는 점이다. 넷째, 중국은 민감한 상업정보 및 상업비밀을 얻기 위해 미국 기업의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무단 침입과 도용을 지휘 또한 지원한다는 점이다. "301 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전자, 가구, 완구 등 품목에 약 2,500억 달러 수준인 중국 수입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였다(Yin Zi-Hui and Choi Chang-Hwan, 2018).

Ⅳ. 법적 타당성 검토

이번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제232조 관세 조치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면제를 부여하지 않았기에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2018년 3월 23일부터 관세부과를 시작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2018년 4월 5일에 WTO 분쟁해결제도(DSU) 제4조, GATT 1994 제22조, 그리고 세이프가드협정 제14조에 따라 수입품 철강 및 알루미늄(일부 회원국을 선택적으로 면제)에 대한 미국의 제232조 관세조치에 관해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협의를 요청했고(DS544), 4월2일부터 미국산 농축산물 등에 대해 15~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 동년에 중국, 인도, EU, 캐나다와 멕시코를 포함한 총 9개국은 WTO에 이번 미국의 제232조 관세조치를 제소했다. 따라서 〈Table 3〉과 같이 이번 제232조 관세조치의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이러한 조치들이 〈Table 4〉의 GATT/WTO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는 중국의 주장을 정리하였다.

이번 사건에서 미국은 철강·알루미늄의 수

Table 3. Section 232 Contents of Tariff Measures

Category	Contents of Action
Steel	Jan 11, 2018,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report: the effect of imports of steel on the national security
	March 15, 2018, the president's proclamation no. 9705: 25% consistent tariffs on imported steel
	March 28, 2018, the president's proclamation no.9711: temporary exemption of steel import tariffs on Canada, Mexico, Australia, Argentina, Korea, Brazil and the EU
Aluminum	Jan 17, 2018,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report: the effect of imports of aluminum on the national security
	March 15, 2018, the president's proclamation no. 9704: 10% consistent tariff on imported aluminum
	March 28, 2018, the president's proclamation no.9710: temporary exemption from imposing duties on imported aluminum on Canada, Mexico, Australia, Argentina, Korea, Brazil and the EU

Source: WTO. DS544.

입이 미국 경제 악화 및 국가안보(핵심 인프라, 중요한 군사 및 상업 시스템 등)를 해할 우려가 있는 수량으로 수입된다고 주장하였다. 철강 같은 경우에는, 매년 5,400만 톤이 소비와 동시에 철강 수입의 국내 소비량 30% 도달로 과도한 철강 수입되고 있으며, 특히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중요한 군사 및 상업 시스템에 필수인 고순도 알루미늄 생산은 외국 생산업체에 의존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결국 미국은 국가 안보의 보호를 위해서 미국 국내법 232조 조치를 개시한 것이다.

〈Table 4〉에서 제232조 조치에 대한 중국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번 미국의 관세조치가 "국가 안보"를 위한 대응이 아닌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이 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발동 및 절차 요건 불충족 및 WTO협정의 최혜국대우 의무 등에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중국의 지적에 미국은 3가지의 주장을 제시하였다. 첫째, 이번 중국의 협의 요청은 세이프가드 협정 제14조를 기반으로 한 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제232조 조치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칠 위협이 있는 철강 및 알루미늄의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이며 세이프가드 협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둘째, 세이프가드 협정 제8.2조에 의한 보복 관세 부과인 중국의 행동은 WTO 규칙에 근거하지 않는다. 즉, 제232조 조치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세이프가드 협정 제8.2조가 중국의 양허 또는 기타 의무 정지를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간주했다. 셋째, "국가 안보" 문제는 정치적 문제이고 WTO 분쟁해결에 의해 검토되거나 해결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국은 GATT 1994의 제XXI조에 의해 WTO의 모든 회원국들은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치를 결정할 권한을 보유한다고 강조했다(DS544/2). 즉, "안전 예외" 조항의 "자기 판단적" 성격으로 인해 국방 안보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후생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에 미중 양국의 주장을 종합하면, 핵심적인 법적 문제는 제232조 조치의 법률 적용 문제로 볼 수가 있다.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제232조 관세 조치가 GATT 1994의 제XXI조 "안전 예외"조항에 합치한다고 주장한 반면, 중국 등 제소국은 이번 미국의 관세조치가 "국가 안보"를 위한 대응이 아닌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미국에 의한 발동한 이번 제232조 관세 조치는 국제통상법의 법률 적용에 있어 논의되

Table 4. China's Claims on Section 232 Measure

	China's claims	GATT / WTO Regulations
1	Section 232 measure is a safeguard measure rather than a "security exception" clause	GATT Articles XXI(b)
2	Failed to meet the conditions of initiation of safeguard measure - Failed to demonstrate the requirements of "unforeseen developments" and "damaging effect on the domestic industry" - Violated the procedural requirements such as notification and consultation	GATT Articles XIX:1(a), XIX:2 Safeguards Agreement Articles 2.1, 2.2, 4.1, 4.2, 5.1, 7, 11.1(a), 12.1, 12.2, 12.3
3	Violation of duty reduction obligations - Imposed tariffs on steel / aluminum products in excess of the duties set forth and provided in the United States' schedule of concessions and commitments annexed to the GATT 1994	GATT Article II:1(a) and (b)
4	Violation of most-favored-nation treatment obligations - Duties are levied only on certain exporting countries	GATT Article I:1
5	Lack of consistency, fairness and rationality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trade system	GATT Article X:3(a)

Source: WTO, DS544.

는 쟁점인 GATT 제XXI조 "안보 예외"조항과의 합치성 및 WTO세이프가드 협정의 준수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1. GATT 제XXI조 "안보 예외" 조항과의 합치성

만약에 미국이 "안전 예외" 조항에 제232조 관세조치를 정당화 하려면 이는 아래의 GATT 1994의 제XXI조(안보상의 예외) 의 제(b)항 (ii)호나 (iii)호의 규정을 활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b)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체약당사자가 간주하는 다음의 조치를 체약당사자가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i) 핵분열성 물질 또는 그 원료가 되는 물질과 관련되거나 (ii) 무기, 탄약 및 전쟁도구의 거래에 관한 조치와 군사시설에 공급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행하여지는 그 밖의 재화 및 물질의 거래에 관련된 조치 (iii) 전시 또는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그 밖의 비상시에 취하는 조치(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1).

이번 관세부과 조치의 합치성 여부는 미국 국내법 하에 정의할 수 있는 "국가 안보"의 범위와 GATT 제XXI조에서 허용하는 "국가 안보"의 범위의 일치에 대한 질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GATT의 "안정 예외"조항 중 포함되어 있는 세 가지 용어, "자신이 간주하는(it considers)", "필수적인(necessary)", "기본 안보 이익(essential security interests)"의 해석과 관련된다. 우선, "자신이 간주하는(it considers)"이라는 표현은 체약당사국들이 "안보 예외"조항을 적용하는데 있어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에 1986년 미국의 무역제한조치에 대한 니카라과의 제소사례(L/6053)에서 미국은 GATT 제XXI조 (b)항이 체약당사자에게 기본적인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했다. 뿐만 아니라 초기에 회원국들의 "안전 예외"조항 적용은 회원국들의 자결권으로 간주될 것이며, GATT 또는 WTO 분쟁해결기구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한 바도 있었다(Li, 2015). 이에 "자신이 간주하는(it considers)"에 대한 해석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일부 국가 조치를 제한할 수 없으며, 한편으로는 너무 광범위하게 설명할 수 없고 "국가 안보"를 국가의 상업적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기본 안보 이익(essential security interests)"중에 언급된 "기본(essential)"은 문의로는 "필수적이거나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 기존 WTO협상 사례를 살펴봤을 때, 네덜란드를 포함한 일부 회원국들은 "기본 안보 이익"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어렵다는 사실을 밝힌 적이 있다. 이에 당시 미국의 대변인은 "광범위한 예외 규칙이 전체 협약에 큰 타격을 줄 것이며, 이에 따라 "기본 안보 이익"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예외 규칙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Lester, 2018). 뿐만 아니라 "안보 이익"의 범위는 가장 최근에도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는 데, 중국에서도 "안보 이익"에 대한 정의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2015년 "중국 국가 안보법"에서 "안보 이익"에 대해 국민 안보, 정치 안보, 경제 안보 및 사회 안보를 포함한 전반적인 "국가 안보" 개념을 제안했으며 "안보 이익"이라는 표현이 넓은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미국이 제시한 "국가 경제 안보"가 "기본 안보 이익"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큰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필수적인...(necessary)"이라는 용어에 대한 해석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판례(DS246)에서 상소기구는 "대체할 수 없는...(indispensable)" 또는 "...위하여(making a contribution to)"으로 해석한 바가 있다. 또한 상소기구는 이 용어를 설명할 때 최소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해당 조치의 기여도, 두 번째로는 해당 조치의 목표 실현에 대한 중요성, 세 번째로는 해당 조치가 국제무역에 대해 제한적인 영향이라는 점이다. 향후, 이 사건이 재판 과정에 들어가면, 심판자는 해당 관세 조치가 미국이 주장하는 "국가 안보"의 보호에 대한 기여도와 중요성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볼 수가 있다(Peng, Zhou and Yang, 2018).

따라서 미국은 계속해서 제XXI조 제(b)항의 "필요하다고 체약당사자가 간주하는 (it considers necessary)"에 주목하는 입장을 이어왔다. 즉 "안보 이익 보호"의 필요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당사국 자체이기에, 제XXI조 제(b)항은 "자기 판단적(self-judging)"이며 사법심사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미국은 "국방 안보"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후생에 따른 안보 위협까지 넓은 개념의 "국가 안보" 정의를 활용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제232조 조치를 발동 한 것이었다. 하지만 GATT 제XXI조 "안전 예외"조항은 회원 국가 간 전쟁 또는 준 전쟁의 상황에만 허용 가능하다는 좁은 의미의 국방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체약당사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행동" 및 "기본 안보 이익"과 같은 주요 용어들에 대해 과장된 해석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인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제232조 개시 공고문 서명 이래 미국에서는 "안전 예외"요항에서 허용되는 보안 위기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의 "232조"는 GATT의 "안전 예외" 조항에 강제로 접목시켜 국제 무역 규칙의 입법 의도를 왜곡한 것이며(Li, 2018), 이러한 미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안보 예외"조항의 범위를 넘어선 것은 불합리 및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제232조 관세조치는 "국가 안보 보호" 목적이라 주장하지만 사실 경제적 측면에 근거하여 GATT 제XXI조에서 허용하는 "안보"목적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안전 예외"조항의 용어가 모호하고 정치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어 무역 자유화를 방해하는 도구로서 특정국가에 의해 취하기 용이하다. 그래서 WTO회원국은 대부분 이 조항을 분쟁해결에 사용하는 것을 피한다. 과거 GATT 1947년 체제에서부터 1995년 WTO 출범 이후 분쟁해결절차에서도 몇 차례 언급 되었던 적이 있으나 패널이나 상소기관이 제XXI조의 실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렸던 적은 없다. 따라서 미국이 적극적 항변 사유로서 제XXI조를 원용할 경우 "안보 예외"조항 원용의 타당성을 심리할 권한이 패널과 상소기관에게 있는지, 만약 그러하다면 패널과 상소기관이 동 조항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할지 아직까지 불분명하다(Lee, Cheon-Gi, 2018).

Table 5. The Claims and Legal Basis of the U.S. and China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Claims of the U.S.	- Section 232 measure is for "national security" and is 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XXI of the GATT - "Self-judging" nature of the "security exception" clause suggests that not only national security but also national economic welfare can be considered - It is not necessary to respond to the WTO agreement obligations because it is not a WTO safeguard measure.
Legal basis of the U.S. claims	- Section 232 of the U.S. Trade Expansion Act of 1962 -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s report:: the effect of imports of steel on the national security -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s report:: the effect of imports of aluminum on the national security - GATT article XXI
Claims of China	- It goes beyond the scope of the "security exception" clause and does not comply with international law. - In fact, it is understood as a safeguard measure, but it is deemed to fail to meet the conditions of initiation of safeguard measure - Incompliance with procedural requirements such as notification and consultation - Violation of the most-favored-nation treatment obligations and the duty reduction obligations
Legal basis of China's claims	- GATT : article I:1; article X:3(a); article II:1(a) and (b); articles XIX:1(a), XIX:2 - Safeguards Agreement : articles 2.1, 2.2, 4.1, 4.2, 5.1, 7, 11.1(a), 12.1, 12.2, 12.3
Legal feasibility	- It is beyond the scope of the "national security" application of the GATT "Security Exceptions" and is likely not to comply with the WTO rules - It is very likely to be understood as a safeguard measure - If this measure is a safeguard measure, the U.S. is deemed to be in breach of WTO's regulations, such as violation of the most-favored-nation treatment obligations, violation of duty reduction obligations, failure to meet the conditions of initiation of safeguard measure and violated the procedural requirements such as notification and consultation

2.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준수 여부 검토

미국은 제232조 조치가 정치적 문제에 해당된 "국가 안보" 문제이며 GATT 제XXI조 "안정 예외"조항에 의해 정당화 되고 WTO 규칙에 의해 검토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국방 안보"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후생에 따른 안보 위협까지 포함 시킨 미국의 조치는 좁은 의미의 국방 요건으로만 인정되는 "안정 예외"조항에 합치하기 어려울 것임에도 불구하고 "산업 보호"를 주 목적으로 한 것은 사실상 무역구제조치인 세이프가드 조치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조치는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식한다하여도 세이프가드의 발동 및 절차적 요건 등에는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으로는 첫째, 예견하지 못한 사태가 발전한 결과로, 둘째,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셋째,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 발생하며, 넷째, 수입 급증과 국내산업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발동 요건 중에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위의 요건을

전제로 한 철강과 알루미늄의 수입증가가 미국의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라는 점 또한 입증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이프가드의 절차적인 요건에서의 통보, 협의 등 요건도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이번 제232조 관세 조치가 중국을 포함한 일부 수출국에만 관세를 부과하며, 일부 수출국에는 면제를 부여했다는 것이 GATT 제1.1조의 최혜국대우의무 및 조사대상 품목인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양허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GATT 제1.1조에 따라 WTO회원국이 타국 상품에 주는 제반 편의, 호의, 특권 또는 면제는 다른 모든 WTO회원국의 동종 상품에 대해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1). 즉, 무역 조치를 채택한 국가는 모든 회원국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하지만 미국의 이번 제232조 조치는 명목상으로는 제품을 겨냥하고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실행 과정에서는 일부 국가만 면제하므로 "최혜국대우"원칙을 위반 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제232조 관세조치에 따른 미중 양국의 주장 및 근거 또한 이번 조치의 법적 타당성을 다음 〈Table 5〉와 같이 정리하였다.

Ⅴ. 결론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내법적 근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호무역조치를 가하고 있다. 즉, 반덤핑 등 기존의 무역구제조치 대신 미국 국내법에 근거하여 일방적 무역조치를 가동해 왔다. 특히, 미국은 국내법인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법적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제232조 관세조치를 중국 등 WTO회원국으로부터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 조치를 대응하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9개의 WTO회원국들은 WTO에 제소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232조 관세조치에 대한 미국/중국/WTO 각각의 법적 근거를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GATT/WTO 규정상의 합치성을 검토하고, 향후 이러한 미국의 제 232조 조치를 대응하는데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이 목적이었다.

법적 타당성으로 검토했을 때, 미국의 제232조 관세조치는 "국가 안보" 침해 이유로 발동한 것이지만 사실 경제적인 측면에 근거하여 "국내 산업 보호"라는 의도를 갖고 출발한 것이었다. 이러한 제232조 관세조치의 특징 및 성격을 고려했을 때 세이프가드 조치로 이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세이프가드 조치로 이해한다하여도 WTO 세이프가드조치 규정의 발동 및 절차적 요건 등에는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세이프가드 조치 관련 규정을 통해 정당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은 GATT "안보 예외" 조항의 적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미국은 "안보 예외"조항의 "자기 판단적" 성격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국가 안보"의 적용범위가 해당 수입품이 관련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과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후생에 따른 안보 위협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GATT 제XXI조 b(ii) 및 (iii)항은 회원 국가 간 전쟁 또는 준 전쟁의 상황에만 허용 가능하다는 좁은 의미의 국방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개념의 "국가 안보" 정의를 활용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제232조 조치의 경우에는 GATT 제XXI조와 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국가 안보" 정의의 임의적인 확대 해석을 바탕으로 최근 빈번히 개시되고 있는 미국의 제232조 조치를 대응하기 위해 이하와 같이 3가지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불합리한 수입조치가 시행된다면 모든 피해 국가들은 WTO 다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를 제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 장치가 정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GATT체제에서 GATT 제XXI조가 "자기 판단 조항"이라는 논리로 패널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관습이 WTO 분쟁해결규칙을 통해 확보된 분쟁해결기구의 표준적 관할권에 따라 재정비되어야 하며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국 수출기업들은 미국의 불공정무역 관련 법 조항의 정확한 내용과 무역 구제제도 운영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대응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미국의 제232조 관세조치는

GATT의 국방 요건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일치하나 국민 경제 후생에 대한 부분은 자의적 판단에 의한 확대해석이기에 불합리한 조치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미국이 부당하게 발동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남용행위를 WTO 다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당한 조치를 제지해야 하며 분쟁해결기구의 표준적 관할권 재정비 및 WTO 예외 조항의 균형적인 검토와 엄격한 적용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에 의한 통상 압박 하에 중국 수출기업들의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2018), *Section 232 Investigations: The Effect of Imports on the National Security* (Webpage). Available from https://www.bis.doc.gov/index.php/other-areas/office-of-technology-evaluation-ote/section-232-investigations

Li, W. (2015), "The Application of WTO Security Exception Clause under the New Security Situation", *Journal of CUPL,* 6.

Li, J. (2018), "U.S. 232 Survey and China's Response", *People Rule of Law,* 10, 3.

Lester, S. (2018), *The Drafting History of GATT Article XXI: The U.S. View of the Scope of the Security Exception* (Webpage). Available from https://worldtradelaw.typepad.com/ielpblog/2018/03/drafting-history-of-gatt-article-xxi.html

Lee, Cheon-Gi (2018), "Protectionism from the United States and WTO Rules: Section 232 of the United States trade expansion act", *Legislative Issue Brief,* 27, 1-1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1, August 23),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MOFA Document). Available from http://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29422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Peng, D. L., W. H. Zhou and G. H. Yang (2018), "National Security in International Trade: An Analysis of the US 232 Investigation",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Research,* 34(5), 91-104.

Song, Back-Hoon and Chang-Soo Lee (2018), "CGE Analysis of the US-China Trade War and Policy Implications to the World Trade", *Korea Trade Review,* 43(5), 47-66.

United States Tade Representative (2017), *The President's 2017 Trade Policy Agenda* (Webpage). Available from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reports-and-publications/2017/2017-trade-policy-agenda-and-2016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2017),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Whether or not Partially or Fully Assembled into Other Products),Volume I: Determination And Views Of Commissioners* (Publication, No. TA-201-75), Washington, DC: Author. Available from https://www.usitc.gov/publications/safeguards/pub4739-vol_i.pdf

United States Tade Representative (2018),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into Chin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under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USTR Database), Washington, DC: Author. Available from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Section%20301%20FINAL.PDF

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2018), *The Effect of Imports of Steel on the National Security* (USDC Database), Washington, DC: Author. Available from https://www.commerce.gov/sites/

commerce.gov/files/the_effect_of_imports_of_steel_on_the_national_security_-_with_redactions_-_20180111.pdf

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2018), *The Effect of Imports of Aluminum on the National Security* (USDC Database), Washington, DC: Author. Available from https://www.commerce.gov/sites/commerce.gov/files/the_effect_of_imports_of_aluminum_on_the_national_security_-_with_redactions_-_20180117.pdf

United State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2018), "The President's Proclamation 9704", *Federal Register*, 83(51), 11619-11624. Available from https://www.gpo.gov/fdsys/pkg/FR-2018-03-15/pdf/2018-05477.pdf

United State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2018), "The President's Proclamation 9705", *Federal Register,* 83(51), 11625-11630. Available from https://www.gpo.gov/fdsys/pkg/FR-2018-03-15/pdf/2018-05478.pdf

United State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2018), "The President's Proclamation 9710", *Federal Register,* 83(60), 13355-13359. Available from https://www.gpo.gov/fdsys/pkg/FR-2018-03-28/pdf/2018-06420.pdf

United State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2018), "The President's Proclamation 9711", *Federal Register,* 83(60), 13361-13365. Available from https://www.gpo.gov/fdsys/pkg/FR-2018-03-28/pdf/2018-06425.pdf

United State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n.d.), *TItle-19 Customs Duties* (GPO Database), Washington, DC: Author. Available from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11-title19/pdf/USCODE-2011-title19-chap7-subchapII-partIV-sec1862.pdf (accessed January 21, 2019)

United State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n.d.), *Title-15 Commerce and Foreign Trade* (GPO Database), Washington, DC: Author. Available from https://www.govinfo.gov/app/details/CFR-2001-title15-vol2/CFR-2001-title15-vol2-part705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1986), *Report of the Panel, United States —Trade Measures Affecting Nicaragua* (L/6053), Geneva, Switzerland: Author. Available from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gatt_e/85embarg.pdf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2005), *European Communities — Conditions for the Granting of Tariff Preferences to Developing Countries* (DS246), Geneva, Switzerland: Author. Available from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246_e.htm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2018), *United States — Certain Measures on Steel and Aluminium Products* (DS544), Geneva, Switzerland: Author. Available from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544_e.htm

Yoo, Ji-Yeong (2017), "Issues of US Section 232 Import Measures on National Security in International Trade Law", *International Trade Law,* 138(12), 9-42.

Yin, Zi-Hui and Chang-Hwan Choi (2018), "A Study on the Legal basis of the U.S. Tariff on China",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Fair Trade*, 101-123.

Trade Agreements Extension Act of 1955, Public Legislative Notice 86, 69 Statute 166 (1955).

Trade Agreements Extensions Act of 1958, 19 U.S.C. §§1351-1367 (1982).